

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안」 설명자료

□ 개정이유

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음으로써 당초 계상된 보다 감액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,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계상 방법을 구체화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

□ 주요내용

-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(안 제5조제1항 개정)
 -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,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함
-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입찰참가자에게 사전 고지 등 (안 제5조제4항 신설)
 -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계약 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미리 열람하도록 함
-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계상 방법 구체화 (안 제4조제3항 개정)
 -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에도 낙찰률이 배제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기준 마련

□ 적용례 및 경과조치

- 개정규정은 '19.1.1.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
- '18.12.31. 이전까지 종전 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17-8호)에 의하여 입찰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 고시의 규정에 따름

현행	심사안
<p>제4조(계상기준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 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<u>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5조(계상시기 등)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 <u>다만,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4조(계상기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별표 1의3에 따라 안전관리비</u>-----.</p> <p>제5조(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<삭제></u>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

【별표 1의3】 (신설, 2018.10.5.)

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·계상 방법

1.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○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=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+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

2.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○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=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× 대상액의 증감 비율

3.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 이 경우,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·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.

○ 대상액의 증감 비율 = [(설계변경후 대상액 - 설계변경 전 대상액) / 설계변경 전 대상액] × 100%